

[거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] [검토 보고]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4. 1. 7.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1. 9.

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5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폐기물 재활용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련규정을 명확히하고,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사업과 관련한 조례 신설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,
-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시행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군민의 청결유지 책무 (안 제4조)
 - 청결유지 책무, 청결유지 조치사항, 청결유지 이행 명시
-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조치근거 마련 (안 제6조)
 - 근거 :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
 - 대상 : 50가구 이하마을 및 산간, 오지, 도서지역 등
-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명시 (안 제7조)

- 배출시간 :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
-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변경 (안 제26조의2)
 -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50%까지 지급
 - 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,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
 -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함.
-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 삭제
-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21조)

3. 검토의견

- 제5조(적용범위) 제2항 ----- 12P
 -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군수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제외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 필요함.
 - 27P 별표4 개정안의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산정 방법과 29P 별표5의 대형폐기물,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의 개정안 신설품목의 처리비 단가산정 근거의 설명이 필요함.
-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참 고

- 폐기물관리법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
- 쓰레기투기단속·포상실적과 개선대책 (환관 67511-11260)
-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(환관 11060-11817)